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12 선고 2021나2987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3. 8.

판 결 선 고 2022. 4. 12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20가소14972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4. 11. 7. 부천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(이하 ‘이 사건 근린생활시설’이라 한다) 가운데 4층 D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4. 11. 11.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합의서(이하 ‘이 사건 합의서’라 한다)를 작성, 교부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5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[인정 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과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자신이 건물청소 용역을 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비를 수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에게 관리비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, 피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 하더라도,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공용관리비에 국한되는데 피고는 그 금액을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,000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, 피고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, 여기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포함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

원고는 피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피고가 납부한 전기료, 수도료 등 공과금 액수보다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,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전기료, 수도료 외에도 다른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

보면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합의서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,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노태현, 판사 김창현, 판사 강영훈

장외사.

장 :

[Redacted]

서울 서초구

[Redacted]

문 :

무천시 원외구

[Redacted]

[Redacted]

상지인등은,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

1. 갑은 [Redacted] 4층 [Redacted]은 건대 낙하차이다

은은 위 건물 관리소장이 쓴다.

— 아 래 —

갑은 위 건물 관리비 미납금은 모두 완납한다.

갑과 은은 2014. 11. 11 까지 미납 관리비 금액을

총 백백만원으로 하고 이에 즉시 변제한다

위 사항을 합의한다

2014 11. 11

갑
은

[Redacted]

